

1. 개정이유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 및 입주요건 확인서류 간소화 대상을 확대하고 임대주택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입주한 임대주택의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여 최대거주기간을 연장하는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를 「최저주거기준」 제3조에 따른 필수 설비시설을 갖추지 않은 옥탑방 또는 상가건물 내 쪽방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까지 확대(안 제3조)
- 나. 임대차 계약의 재계약에 관한 사항은 건설·매입·전세임대주택 등 입주한 임대주택의 관련 규정이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함(안 제13조)
- 다. 입주자 현황조사, 입주자격 기초조사서 등 입주요건 확인 서류 간소화 대상을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까지 확대(안 제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쪽방(상가건물 내 쪽방을 포함한다)

아. 「최저주거기준」 제3조에 따른 필수설비시설을 갖추지 않은 옥
 탑방

제4조제3항 중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수급받는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수급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자격확인증명서류”로 한다.

제13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시 재계약에 관한 사항은 건설·매입·전세임대주택 등 입주한 임대주택의 관련 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주자격 기초조사서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주소 :
- 연락처 : (신청인) (운영기관)

입주신청자격 (해당란에 기재, V표)

항목	세부기준	조사결과	적합여부 (적, 부)
대상자 유형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 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옥탑방 () ▪비닐하우스 () ▪고시원·여인숙 () ▪노숙인 시설 () ▪컨테이너·옴막 등 () ▪PC방, 만화방 () ▪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재해 우려 지하층 () ▪최저주거기준 미달 유자녀 가구 () ▪긴급 주거지원 필요 가구 () ▪쪽방(상가건물 내 쪽방 등) () 	
무주택	주택의 소유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상임차 () ▪무료임차 () 	
자 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자산 _____ 원 ▪자산 없음 () 	
자 동 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동차기준 이하 * 장애인용·영업용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기준가액 _____ 원 ▪자동차 없음 () 	
소 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월평균소득액 _____ 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비정상거처 거주사실 조사서

성명		생년월일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주소					
연락처					
조사 내용	조사일시	20 . . . ()			
	주거유형	<input type="checkbox"/> 쪽방(상가건물 내 쪽방 등) <input type="checkbox"/> 고시원 · 여인숙 <input type="checkbox"/> 비닐하우스 <input type="checkbox"/> 옥탑방 <input type="checkbox"/> 노숙인 시설 <input type="checkbox"/> 컨테이너 · 움막 <input type="checkbox"/> PC방 · 만화방 <input type="checkbox"/> 반지하 <input type="checkbox"/> 기타()			
	주거여건 및 거주여부 (상세)				
	증빙자료 (사진 등) *첨부가능				
조사결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인)	

※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 첨부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 소					
연락처					
주거유형	<input type="checkbox"/> 쪽방(상가건물 내 쪽방 등) <input type="checkbox"/> 고시원 · 여인숙 <input type="checkbox"/> 비닐하우스 <input type="checkbox"/> 옥탑방 <input type="checkbox"/> 노숙인 시설 <input type="checkbox"/> 컨테이너 · 움막 <input type="checkbox"/> PC방 · 만화방 <input type="checkbox"/> 반지하 <input type="checkbox"/> 기타()				
용도	용자 지원	제출처			
위 사람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따른 비정상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하였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 년 월 일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신청인: 성 명 (인) </div>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읍 · 면 · 동장 귀하					
위 사실을 확인함.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 년 월 일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읍 · 면 · 동장 직인 </div>					
※ 이 확인서는 발급일부터 3개월간 유효합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황 유형 확인서

성 명		생년월일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주 소					
연락처					
주거유형	<input type="checkbox"/> 쪽방(상가건물 내 쪽방 등) <input type="checkbox"/> 고시원 · 여인숙 <input type="checkbox"/> 비닐하우스 <input type="checkbox"/> 옥탑방 <input type="checkbox"/> 노숙인 시설 <input type="checkbox"/> 컨테이너 · 움막 <input type="checkbox"/> PC방 · 만화방 <input type="checkbox"/> 반지하 <input type="checkbox"/> 기타()				
공공주택유형	<input type="checkbox"/> 전세임대 <input type="checkbox"/> 매입임대 <input type="checkbox"/> 영구임대 <input type="checkbox"/> 국민임대 <input type="checkbox"/> 민간임대 <input type="checkbox"/> 기타()				
<p>「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따른 입주대상자 또는 계약자임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px;"> 년 월 일 </p>					
공공주택사업자:			공사 <div style="display: inline-block; border: 2px solid orange; padding: 5px; margin-left: 10px;"> 직인 </div>		
※ 이 확인서는 발급일부턴 3개월간 유효합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입주대상자) ① 이 지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 또는 사업시행자가 주거사다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거나, 법무부장관이 주거사다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한 범죄피해자에 한한다.(이하 “입주대상자“라 한다)</p> <p>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거 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주거사다리 지원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되, 최근 1년간 각 호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p> <p style="padding-left: 20px;"><u>가. 쪽방</u></p> <p style="padding-left: 20px;">나. ~ 사. (생략)</p> <p><u><신설></u></p>	<p>제3조(입주대상자) ① ----- ----- ----- ----- ----- ----- ----- ----- ----- ----- ----- ----- -----</p> <p>1. ----- ----- ----- ----- ----- -----</p> <p style="padding-left: 20px;"><u>가. 쪽방(상가건물 내 쪽방을 포함한다)</u></p> <p style="padding-left: 20px;">나. ~ 사.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u>아. 「최저주거기준」 제3조에 따른 필수설비시설을 갖추</u></p>

2. ~ 4. (생략)
 ② ~ ④ (생략)
 제4조(입주신청 등) ①·② (생략)
 ③ 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제2항에 따른 입주자 현황조사 및 별지3 입주자격 기초조사서 작성에 있어서 소득과 자산의 확인은 수급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로 대체한다.

④ (생략)
 제13조(주택의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등) ① (생략)
 ②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시 재계약은 2년 단위로 하되, 재계약 횟수는 9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운영기관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계약 횟수 등을 제한하지 아니

지 않은 옥탑방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입주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수급받는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자격확인증명서류-----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주택의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시 재계약에 관한 사항은 건설·매입·전세임대주택 등 입주한 임대주택의 관련 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할 수 있다.

③ ~ ⑥ (생략)

-----.

③ ~ ⑥ (현행과 같음)